

어선용품 형식시험업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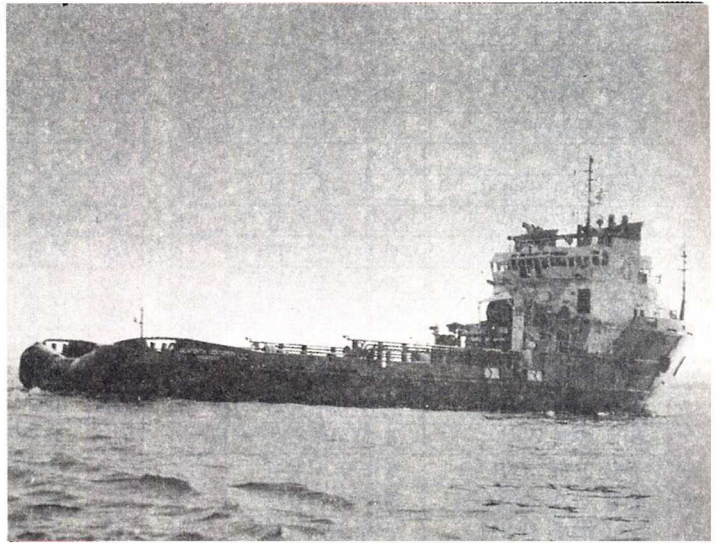
〈본 협회 방재시험소 인증업무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소 (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 약칭 FILK)는 1990년 11월 19일 수산청으로부터 방재관련분야의 어선용품중 분말소화기, 분말소화제에 대한 형식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 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번 방재시험소에서 수행하게 된 어선용품은 육상의 건물용과는 달리 해상의 어선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히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업무가 필요한 것이며, 동 업무로 제조자가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어선에서의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극소화하여 손실경감에 기여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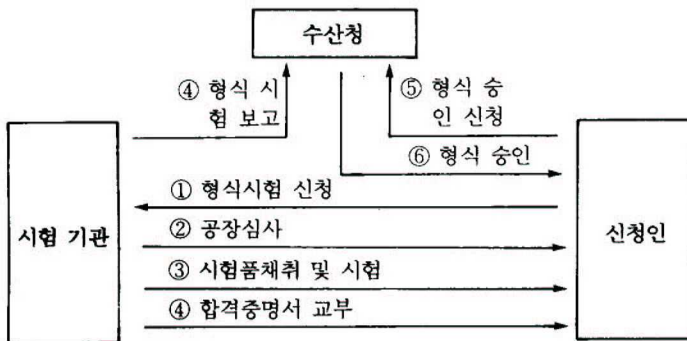
1. 법적근거

어선의 시설(이하“어선용품” 이



라 한다)은 「어선법」 및 「어선용품의 형식 및 제조시설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부령 제 989호, 1987.11.6)」에 따라 수산청의 형식승인을 받아 어선용으로 제조, 판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형식승인 시험 절차



〈업무절차〉

(1) 신청서류 접수

어선용품 등의 형식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① 형식시험 신청서
- ② 어선용품의 제조사양서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 ③ 어선용품의 성능, 도면, 구조, 형식 및 재료와 그 사용법에 관한 설명서
- ④ 기타 어선용품 등의 형식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단, 위의 서류중 도서(註1)는 한국어선협회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심사

형식시험을 하기 전에 시험기관은 제조자가 신청한 어선용품을

계속하여 품질을 균일하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설비, 제조법, 품질관리, 검사조직등)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할 수 있다.

공장심사는 시험기관의 시험원이 제조사업장에 입회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①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현황과 제조 능력
- ② 각종 사내규격, 작업표준 및 품질관리의 확립과 그 실시현황
- ③ 형식시험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현황
-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장심사는 가능한 한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간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에 판매자

는 제조자와 협의하여 공장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형식시험

형식시험은 신청서류 검사와 공장 심사후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원이 실시한다.

형식시험을 위한 시험품은 가능한한 공장심사 시기에 시험원이 입회하여 채취하며 시험장소는 원칙적으로 지정시험기관에서 실시된다.

(4) 형식승인

형식승인 신청제품에 대한 형식시험을 하고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시험기관은 형식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수산청장과 한국어선협회에게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형식시험을 보

고해야 한다.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 신청서에

- ① 형식시험 합격증명서
- ② 어선용품 등의 성능, 도면, 구조, 형상 및 재료와 그 사용법에 관한 설명서

③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수산청장은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형식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다. (●)

註1) "도서"라 함은 어선용품에 관한 구조, 형상, 치수 및 재료 등을 표시한 설계도면과 성능에 관한 설명서 및 제조 사양서를 말한다.



“FILK”란

우수방화·안전관련 제품에 대해서
방재시험소가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입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부설

방재시험소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69-1

전화 : 서울 745-7770, 744-7853, 여주 (0337) 82-3526, 3527